

# 5. 住宅新築用土地의 非業務用判定猶豫 期間 延長關聯 業務處理指針

住政 58500-660 1996. 4. 2

## 1. 제정이유

–'95.11.8 시행한 『주택시장 안정대책』의 후속조치로 주택경기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는 바,

- 여기서 「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」라 함은

-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「지역」 및 「기간」에 해당되고
- ②당해토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택건설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

– 이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

- 위 ①항의 지역 및 기간을 규정하고
- 시장 등이 관련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

※관련법조문 :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

## 2. 업무처리지침

- (1)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

- 지역 :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
- 기간 : 1996.1.1~1996.12.31(기간 연장은 주택시장의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)

## (2) 확인업무 처리절차

### ◦ 확인신청

- 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〈별첨 1〉의 서식을 작성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)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

### ◦ 확인서 발급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한 후 착공이 곤란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토록 함

• 「기간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함(1996년의 경우는 1996.1.1~1996.12.31로 함)

- 확인서는 신청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발급

- 확인서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하되 사본 1부를 작성·보관토록하고 발급사실을 「확인서 발급대장」(별첨2)에 기재토록 함

〈별첨 1〉

확인서

(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관련)

신청인	법인명		대표자	
	사업자등록번호			
	소재지			
신청토지	토지소재지			
	면적	m <sup>2</sup>		
	취득일			
확인사항	토지소재지			
	면적	m <sup>2</sup>		
	착공이 곤란한기간			
<p>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청인) _____ (인)</p>				
<p>위 사실을 확인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 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(인)</p>				

※첨부서류 : 1. 법인등기부 등본 1본  
2. 토지등기부 등본 1부

〈별첨 2〉

확인서 발급대장

연번	발급일	신청인	토지소재지	면적	취득일	비고